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도입 현황과 시사점

-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서민층 및 젊은층의 목돈마련 지원과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2014년 3월에 도입한 절세형펀드 상품으로서, 출시 이후 순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펀드수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시 이전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세제혜택이라는 장점이 부각되어 침체된 국내 펀드 시장 및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서민층 및 젊은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투자대안 상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음
-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가입대상 한정에 따른 근로자의 가입여력 제한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이 초반 출시 이후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일본은 가입대상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이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투자자비과세제도인 NISA를 도입한 이후 펀드 및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관측됨
- 국내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양호한 성장세가 시현되고 있으나, 시장 일각에서 가입대상 한정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득공제 장기펀드 제도개선과 이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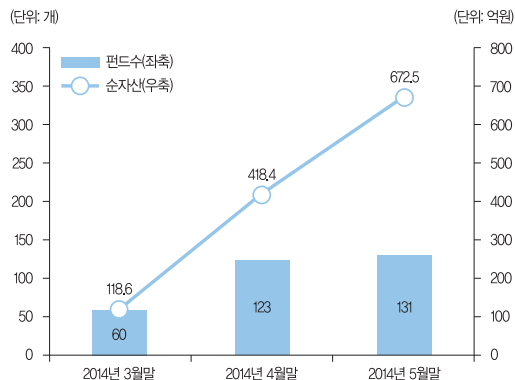
-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서민층 및 젊은층의 목돈마련 지원과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2014년 3월에 도입한 절세형펀드 상품으로서, 출시 이후 순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펀드수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저금리기조의 고착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펀드시장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서민층과 젊은층의 목돈마련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강화를 위하여 2014년 3월 도입함
 - 소득공제 장기펀드¹⁾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10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납입시 최대 24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임

1) 가입대상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5년 이내 해지시에는 실제 감면소득세액이 추징되며 2015년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한시적 상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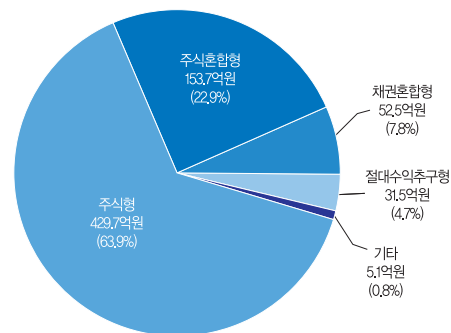
- 연간 600만원 납입시 과표구간에 따라 연말정산시 약 14만4천원에서 36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서민층 및 젊은층에게 절세효과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펀드자산총액의 40%를 투자하는 상품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임
- 제로인에 따르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출시 이후 2014년 5월말까지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주식형 펀드상품에 자금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순자산은 3월말 118.6억원에서 5월말 672.5억원으로 553.8억원(467%)이 증가했으며, 펀드당 평균 순자산 규모도 3월말 2.0억원에서 5월말 5.1억원으로 3.1억원(148%)이 증가하여 3월말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 5월말 현재 판매중인 131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주식형펀드에 약 64%(순자산 429.7억원)가 투자되어 있으며, 주식혼합형에 22.9%, 채권혼합형에 7.8%, 절대수익추구형에 4.7%가 투자되어 주식형 펀드상품에 대부분의 자금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공제 장기펀드 순자산 및 펀드수



자료: 제로인

소득공제 장기펀드 유형별 순자산 금액 및 비중
(2014년 5월말 기준)



□ 출시 이전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세제혜택이라는 장점이 부각되어 침체된 국내 펀드시장 및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서민층 및 젊은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투자대안 상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음

- 국내 펀드시장은 전체 펀드설정액이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12년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2008년 전체 펀드설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서 2014년 5월말 현재 23%까지 하락하여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전체 펀드설정액 추이: 361조원(08년)→318조원(10년)→320조원(12년)→351조원(14년5월말)
 - 전체 펀드설정액 대비 주식형 비중: 38.9%(08년)→31.8%(10년)→29.6%(12년)→23.0%(14년5월말)

— 국내 펀드시장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장점 부각으로 인해 투자자의 자금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상품의 특성상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4분기와 연초에 펀드가입 고객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임

-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최근 절세상품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 완화 측면에서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 우세한 편임
- 무엇보다도, 은행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 추구를 위해 일정이상의 위험을 부담하려는 서민층 및 20~30대 젊은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투자대안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가입대상 한정에 따른 근로자의 가입여력 제한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이 초반 출시 이후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음

—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서민층 및 젊은층을 가입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신입사원의 경우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가입을 할 수 없으며, 가입대상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펀드상품의 기본적 속성인 원금손실 가능성과 5년 이상 장기 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펀드가입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임

- 국세청 2012년 소득통계에 따르면, 가입대상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30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2.7%에 해당되고 있으나,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58.9%를 차지하여 실제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가입여력이 제한적인 실정임

— 비슷한 유형의 절세상품인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을 통해 실제 소득공제를 받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 비율도 약 10%에 불과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서민층 및 젊은층은 연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을 통해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해당 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15.4% 및 38.8%로 조사된 가운데,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각각 12.3% 및 9.7%인 반면, 총급여 4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각각 39.8% 및 37.8%로 집계됨



과세대상 총급여 규모별 근로자수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청 근로자수

(단위: 명, %)

	5천만원 이하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 규모별 ¹⁾								총인원 ⁵⁾
	1천만원 이하	1.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4.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소계	
인원 ²⁾	3,781,952	2,194,485	1,711,839	2,471,883	1,683,679	641,980	546,520	13,032,338	15,768,083
비중 ²⁾	(29.0)	(16.8)	(13.1)	(19.0)	(12.9)	(4.9)	(4.2)	(100.0)	(82.7)
인원 ³⁾	130	2,287	4,092	10,674	14,540	9,352	11,646	52,721	343,079
비중 ³⁾	(0.2)	(4.3)	(7.8)	(20.2)	(27.6)	(17.7)	(22.1)	(100.0)	(15.4)
인원 ⁴⁾	1,637	27,532	59,826	197,004	285,593	168,598	179,763	919,953	2,373,093
비중 ⁴⁾	(0.2)	(3.0)	(6.5)	(21.4)	(31.0)	(18.3)	(19.5)	100.0	(38.8)

주 : 1) 근로소득(총급여)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

2) 5천만원 이하 과세대상 근로자수 대비 각 총급여 규모별 근로자수가 차지하는 비중

3) 5천만원 이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청 근로자수 대비 각 규모별 근로자수가 차지하는 비중

4) 5천만원 이하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청 근로자수 대비 각 규모별 근로자수가 차지하는 비중

5) 전체 과세대상 근로자수 대비 5천만원 이하 과세대상 근로자수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2013 국세통계연보, 2012.1.1~2012.12.31 기간 소득통계 기준

□ 최근 일본은 가입대상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이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 투자자비과세제도(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NISA)를 도입한 이후 펀드 및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관측됨

— 일본 금융당국은 영국의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모델로 NISA를 2014년 1월에 도입하여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구사함

- NISA는 연간 100만엔 범위 내에서 상장주식과 ETF를 포함한 펀드 등에 투자한 경우에 5년 동안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써, 20세 이상의 일본 거주자이면 NISA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력에 큰 제한이 없는 상품임
- NISA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투자할 수 있으며, NISA 계좌에 보유된 상장주식 및 펀드상품 등은 언제든지 제한 없이 중도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1월말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 약 650만명이 NISA 계좌를 신청하였으며, 2014년 12월말(도입 이후 누계기준) NISA 계좌수가 865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NISA 계좌의 운영재원을 살펴보면, 예금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자금이 19.1%로 조사됨
- 또한, NISA 계좌의 평균 투자금액은 59만3천엔이며, NISA 계좌를 가진 50.2%의 기투자자는 추가적인 자금투입을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됨

— 일본의 NISA는 전체 가계자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략 873조엔의 예금자산을 펀드 및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사실상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3년말 기준 일본의 전체 가계자산 중 현금과예금 비중이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투자신탁협회에 따르면, 2014년 1월 주식투자신탁(펀드형 상품) 증가액이 2007년 8월 이후 최고수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또한, 2014년 1~3월 일본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 금액 1조5천억엔 가운데, 이 중 5천억엔이 NISA 계좌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됨

□ 국내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양호한 성장세가 시현되고 있으나, 시장 일각에서 가입대상 한정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득공제 장기펀드 제도개선과 이를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에서 출시된 해외펀드는 비과세혜택이 종료된 이후 해당상품에 대한 투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형저축펀드의 경우도 초반 출시된 이후로 계좌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펀드자금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유인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재형저축펀드는 가입대상, 기간 및 한도 등을 제한하는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상품에 대한 자금유입이 제약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출시 이전부터 침체된 국내 펀드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나, 시장 일각에서는 가입대상 한정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펀드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향후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관련제도 개선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본을 포함한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선임연구원 태 희